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-73호

「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제21조 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9월 7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 예고

1. 제정이유

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대전광역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의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.
- 나. 한국수화언어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한국수화언어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.

라. 한국수화언어의 육성 사업의 추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지원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).

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행정 자치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) (전화 042-270-5124, FAX 042-270-5029, E-mail : pil6969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대전광역시 농 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한국수화언어법」에 따른다.
- 제3조(실태 조사) ① 대전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4조(사업)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홍보판, 전광판 등 대전광역시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
 - 2. 공공기관 및 각종 이벤트에 수화통역사 배치 지원
 - 3.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

- 4.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 사업
- 5. 그 밖에 한국수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5조(보조)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포상) 시장은 한국수어의 육성에 이바지한 기관·단체 또는 시민 등을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한국수화언어법

- 제2조(기본이념) ① 한국수화언어(이하 "한국수어"라 한다)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.
 -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수어와 농문화를 계승·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 -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(이하 "농인등"이라 한다)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생활영역(이하 "모든 생활영역"이라 한다)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,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 -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.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·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·적용함에 있어 「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9조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 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

따라야 한다.

-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·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